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27 호

2003 년 7 월 18 일 금 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91호(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0호(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부과에따
른사전처분통지서공시송달공고)----- 1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1호(담배소매인지정신청공고)----- 2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2호(2003-5회차압류차량공매공고)----- 2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3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
공고(석정중학교시설사업및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 2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4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
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논현2택지))-----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6호(공사전자입찰공고(공사명:만
수동소3-91호선도로개설공사))----- 3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8호(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조례(안)입법예고공고)----- 3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18.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91호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지시설을 변경 할 수 있다.

1. 집회실 또는 강당
2. 경로식당
3. 물리치료실
4. 노인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교실
5. 이·미용실
6. 체력단련실
7. 상담실
8. 주간보호실
9. 사무실
10.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제3조(위탁공고)조례 제4조에 의한 위탁공고(별지 제1호서식)는 지방일간지, 구보, 구 홈페이지 또는 구 지정 게시판등에 공고한다.

제4조(위탁신청)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에 의거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4. 사회복지 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6. 법인 정관 및 등기부 등본
7.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 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제5조(수탁자 지정)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위탁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노인복지사업에 기여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이 의거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관 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등) ①제5조제2항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내에 구청장과 위탁운영 협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자체 노인복지회관 운영규정을 작성, 위탁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회관을 운영 및 관리하되 위탁신청 당시의 법인 또는 단체와는 구별하여 회관을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운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지정일까지 입주를 기피하는 경우
 2. 구청장의 승인이 없이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구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
 3. 구청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할 때
 4. 기타 위탁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해지에정 30일전에 위탁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 연장결정은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운영협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협약만료 2개월전에 해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남동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인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회관 운영 신청당사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노인계, 학계, 종교계, 의료계, 여성계, 구의원, 기타 노인복지관계전문가
2. 기타 유관기관 단체 인사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남동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과장, 서기는 업무관련담당이 된다.

⑥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두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체결된 남동구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계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위탁운영협약서로 본다.

○ 제정사유

-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남동구 노인복지사업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함.

○ 주요골자

-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종류(제2조)
- 위탁관리 신청 절차및 수탁자 지정(제4조 및 제5조)
- 위탁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
- 위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호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종합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 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다 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회관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4-12
- 회 관 규 모 :
- 위 탁 운 영 :
- 신 청 기 간 : 년 월 일
- 접 수 장 소 : 남동구청

2. 위탁운영 신청 참가자격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 현장설명 실시 및 장소

4. 참가자 제출서류

- 가. 위탁신청서(본 회관 소정양식)
- 나. 사업계획서 1부.
- 다.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각 1부.
- 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마.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 바.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사.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453-2384)
-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제2호서식】

위탁신청서

1. 건물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2. 신청자 기재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 인 형 태	
현소재지			
제정상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위탁희망 관리기간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1부.
- 나.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각 1부.
-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부.
-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 마.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 가. 입주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함.
-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대표자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수탁자 법인 또는 단체명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협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기간까지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4-12

건 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위 표시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남동구청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기간) ① “갑”은 위 표시 노인복지회관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노인복지회관의 향후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위탁관리보조) ① “갑”은 “을”에게 위탁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한다

② “을”은 위탁관리에 관하여 “노인복지회관시설의장”과 협의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 매분기말 “갑”에게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내용)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 제3조(관장업무)”에서 정한 사업으로 “을”은 “노인복지회관시설의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제4조(준수사항) ① “을”은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탁권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위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기타 노인복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갑”은 건물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을”이 건물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상의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을”과 “노인복지회관시설의장”은 책임한계의 명확을 기하고자 협의하여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갑”의 승인후 행한다.

제5조(지도감독) “갑”은 노인복지회관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6조(사용명칭) “을”은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서 대내외적 명칭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없이 “갑”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해지조건)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발생 때
2. “갑”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할 때
3. “을”이 계약내용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제8조(해지통보) “갑”“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과 운영권은 계약일로부터 발효한다.

②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제정등으로 조정, 변경, 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0조(준용)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 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바에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위탁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청길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을”(수탁자) :

【별지 제5호서식】

위탁협약해지통지서

수탁자 법인 또는 단체명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6호서식】

해 지 신 청 서				
수탁자 기재 사항	위탁기간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입주년월일	
해지신청자			퇴거년월일	
해지사유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7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계약을
해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2월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0호

공시송달공고

성 명 : [별 기]

서류명칭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공고기간 : 2003. 7. 14 - 2003. 7. 29(15일간)

송달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제63조 제3항(과태료)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2003. 7. 29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청소과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 별첨

2003. 7.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시승달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1	2003.4.24.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인천31도1432	김미운		인천 연수구 연수동
2	2003.4.24.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경북84가13792	김동훈		경북 청송군 부동면
3	2003.4.23.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차장	전단지 투기	경북1호2354	하봉물		경북 포항시 북구 상원동
4	2003.4.24.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인천86비3210	배영관		인천 연수구 연수동 !
5	2003.4.24.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인천80너15912	강송진		인천 남구 송의동 12호
6	2003.4.24...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인천70가9285	김현태		인천 남동구 남촌동
7	2003.4.24.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경북86비3972	김종구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
8	2003.4.24.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인천31더 3162 (현 서울45누	김덕재		서울시 강서구 방화
9	2003.4.24.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인천31가9226	장용구		인천 부평구 신곡동
10	2003.4.26.	구월농축산물시장	쓰레기(봉지) 투기	인천80너7221	여상국		인천 남구 주안동
11	2003.4.26.	구월농축산물시장	휴지투기	인천2도6564	이광철		인천 남구 학익동
12	2003.4.26.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인천32너6815	정태원		인천 부평구 심
13	2003.4.26.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경기83너5110	장성희		시흥시 대야동
14	2003.4.26.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인천33모4550	박인택 외1인		인천 남구 주안동
15	2003.4.26.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인천30모1371	상복전		인천 중구 선린!
16	2003.4.26.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차장	전단지 투기	서울47고1018	정석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	2003.4.26.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전단지 투기	인천31라3803	배칭진	인천 남동구 간석동
18	2003.4.26.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전단지 투기	인천82나6076	정병호	인천 남동구 고잔동
19	2003.4.26.	소래포구	담배공초투기	경기51나2569	박상순	경기도 시흥시 곰이들
20	2003.4.26.	소래포구	담배공초투기	경기49로5154	심용화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21	2003.4.26.	소래포구	담배공초투기	경기42머1077	이행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22	2003.4.26.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전단지 투기	인천307라5704	윤주운	인천 부평구 신곡동
23	2003.4.26.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전단지 투기	인천32가1121	차영철	인천 부평구 심정동
24	2003.4.26.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전단지 투기	인천32너4791	김미영	인천 부평구 청천동
25	2003.4.25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전단지 투기	경기79가1405	김경애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6	2003.4.25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전단지 투기	인천33나6149	김해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27	2003.4.25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전단지 투기	경기38라2566	최은영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8	2003.4.25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전단지 투기	경기31너4443	김하경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9	2003.4.25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전단지 투기	인천4머8503	구자돈	인천 서구 석남동 109-55 테화아파트
30	2003.4.23	구월농축산물시장	명함투기	인천32너9265	이호철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31	2003.4.23	구월농축산물시장	담배공초투기	서울35하9739	경서텔레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2	2003.4.23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전단지 투기	인천33너4294	김석주	인천 남구 문학동
33	2003.4.23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명함투기	인천33더2030	성원호	인천 남구 학익동
34	2003.4.23.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전단지 투기	인천32너6188	김숙명	인천 남동구 만수동
35	2003.4.24.	구월농축산물시장 주최장	합, 전단지투	인천30더5205	위귀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36	2003. 4. 26.	구월동축산물시장 주치장	전단지 투기	경기42마1745	신안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남동
37	2003. 4. 26.	구월동축산물시장 주치장	전단지 투기	인천35나4610	김인권	인천 동구 만석동	
38	2003. 2. 13	구월동축산물 도매시장내	담배공초투기	인천31루1846	구자협	인천 연수구 선학동	
39	2003. 2. 13		"	인천83나7337	임광덕	인천 서구 가정2동 2	
40	2003. 2. 13	남동등기소 뒷골목	"	인천70다3316	지두현	인천 남동구 만수1동	
41	2003. 2. 14	구월동축산물 도매시장내	"	인천32가9060	구희림	인천 연수구 연수1동	
42	2003. 2. 14	소래포구 인구	담배공초투기	경기65노8876	유미진설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43	2003. 2. 14	인천터미널 부근대로	담배공초투기	인천32리6676	윤석진	인천 남동구 구월3동1	
44	2003. 2. 7	구월동축산물 도매시장내	담배공초투기	인천31무9430	서창호	인천 남구 용현동 557-1	
45	2003. 2. 7	구월동축산물 도매시장내	담배공초투기	인천80마3077	민영유물	인천 연수구 연수동	
46	2003. 2. 7	구월동축산물 도매시장내	담배공초투기	강원27노4184	김승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설리	
47	2003. 2. 7	신세계백화점앞	담배공초투기	인천83다6353	변옥성	인천 남동구 구월동	
48	2003. 1. 24. 16시경	문진면허시험장앞	담배공초투기	인천30나9937	강환성	인천 부평구 청천동	
49	2003. 1. 24. 17시경		"	인천33도6433	차순재	인천 남구 도화동	
50	2003. 1. 28. 12:17		"	인천30바1309	전익배	인천 연수구 연수동	
51	2003. 1. 29. 12:28		"	인천83다4289	최영길	인천 서구 가정동	
52	2003. 2. 4. 11:05		"	인천34대7047	권은희	인천 중구 신흥	
53	2003. 2. 4. 11:05		"	인천34대7047	권은현	인천 중구 신흥3가	
54	2003. 2. 4. 14:11		"	인천30바2621	최광택	인천 연수구 연수동	

55	2003.2.4.14.59	.	.	인천30바2643	신정일		인천.연수구 연수동
56	2003.2.4.15.40	.	.	인천30바18852	이상구		인천.서구 가좌동 1
57	2003.2.4.15.45	.	.	인천30바2061	손관삼		인천.남구 용현동
58	2003.2.4.16.05	.	.	인천30바1978	이의규		인천.남구 용현동 6
59	2003.2.4.18.12	.	.	인천30바18069	안용덕		인천.연수구 연수동
60	2003.2.5.14.10	.	.	인천30바1548	장만호		인천.연수구 선학동
61	2003.2.7.10시	고잔동 논고개길48	불법소각	인천80가1940	김성용		인천.부평구 부평동
62	2003.2.7.11.40	운진면허시험장옆	담배꽂초투기	인천30바2621	최광택		인천.연수구 연수동 5
63	2003.2.7.11.43	.	.	경기34녀13935	손국택		경기도 양주군 회천동
64	2003.2.7.11.54	.	.	경기51녀2943	강신희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65	2003.2.7.12.17	.	.	인천30바4151	김경수		인천.남동구 구월동
66	2003.2.7.13.21	.	.	인천30바1757	임승식		인천.남동구 만수동
67	2003.2.7.16.44	.	쓰레기투기	인천80더18752	김경숙		인천.남동구 남촌동 3
68	2003.1.20.13시경	고잔동 678-1앞	담배꽂초투기	인천93자8813	양지운수		김포시 양촌면 두산리
69	2003.1.22.15:14	운진면허시험장옆	.	인천31바1348	인천택시		인천.남구 용현동 1
70	2003.1.22.15:20	.	.	인천31바1608	성진기협		인천.남동구 간석
71	2003.1.28.12:37	운진면허시험장옆	담배꽂초투기	인천31바1620	성진기협		인천.남동구 간석
72	2003.1.28.13:45	.	.	인천31바17342	동삼택시		인천.남구 학익동
73	2003.1.28.13:47	.	.	인천31바17029	제물포택시		인천.서구 석남동
74	2003.1.28.14.28	.	.	인천31바13548	동일운수		인천.남구 용현동
75	2003.2.4.13.12	.	.	인천31바17316	동삼택시		인천.남구 학익동

76	2003.2.4.14:49	•	•	인천31	종전기업	인천 서구 가좌동	
77	2003.2.4.14:54	•	•	인천31마	정기업	인천 남구 용현동	
78	2003.2.4.14:56	•	•	인천31	정부공공	인천 계양구 호수 001-21	
79	2003.2.4.15:15	•	•	인천3	종전기업	인천 서구 석남	
80	2003.2.4.16:14	•	•	인천3	공수	인천 서구 가좌	
81	2003.2.6.14:54	•	•	인천31	포매시	인천 남구 석남동	
82	2003.2.6.15:21	•	•	인천3	공공	인천 남구 주안동	
83	2003.2.7.10:48	•	•	인천3	공수	인천 남구 용현동	
84	2003.2.7.11:11	•	•	쓰레기투기	공수	인천 남구 용현동	
85	2003.2.7.13:39	•	•	담배꽂투기	신원수	인천 서구 가좌	
86	2003.2.10.16:32	•	•	담배꽂투기	신원수	인천 남동구 긴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1호

담배소매인지정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5항(소매인의 지정등)에 의거 신축대형 상가에 대하여 담배소매업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공고대상 : 인천 남동구 도림동 도림택지개발 주공1단지 상가
- 공고기간 : 2003. 7. 16 ~ 2003. 7. 25(10일간)
-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일반소매인 1개소)
- 신청기간 : '03. 7.23~'03. 7. 25(3일간)
- 지정방법 : 공개추첨(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권리확인서
- 접 수 처 : 남동구청 지역경제과(문의전화 032-453-2473)
- 기타사항
 -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동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단, 2인 이상인 경우 추첨하고, 담배사업법제16조제2,3항을 준용함)

2003. 7.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2호

2003-5회차압류차량공매공고

지방세등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합니다.

가.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번호	공매재산의 표시			매각예정가격	공매차수
	품명	제작자,규격,요량등	수량		
2003-1	인천30무5501	'95크레도스	1	800,000	1차
2003-2	인천 3러4610	'94엘란트라	1	100,000	1차
2003-3	인천30모5897	'93르망	1	50,000	1차
2003-4	인천30구8931	'93슈퍼살롱	1	100,000	1차
2003-5	인천 2머9095	'94티코	1	50,000	1차
2003-6	인천31더3701	'88그랜저	1	50,000	1차
2003-7	인천 3라9421	'91쏘타타	1	50,000	1차
2003-8	인천31가7544	'91룩스타	1	100,000	1차
2003-9	인천 1거6064	'92프린스	1	50,000	1차
2003-10	인천 4가6229	'91엑셀	1	50,000	1차
2003-11	인천80다5102	'92와이드봉고	1	200,000	1차
2003-12	인천3머1052	'94콩코드	1	180,000	2차
2003-13	인천3러2130	'94프린스	1	180,000	2차
2003-14	인천2도7795	'94엘란트라	1	270,000	2차
2003-15	인천3모4738	'95티코	1	225,000	2차

나. 입찰신청 및 보증금 입금마감기간: 2003. 07. 16. - 2003. 07. 28.

24:00시 (12일간)

입찰등록기간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유찰시 2회차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

다. 입찰 참여마감일시 : 2003년 7월 29(화) 14시

라. 개찰결과 매각결정 일시 : 2003년 07월 29일 14시

(주)오토마트 홈페이지 발표

※ 입찰참여 마감후 입찰보증금 입금여부 확인

마.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하며,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단독입찰 가능 단, 국세징수법 제66조 해당자 입찰 제한)

바.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www.automart.co.kr)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다음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 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한미은행 465-00095-258, 남동구청 (본인명의로만 입금)

사.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우리구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아.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자. 기타사항

- ※ 공매물건의 하자 및 표시착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본인 책임하에 현지확인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7,500원이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징수관리팀 차량공매담당
([032-453-2295](tel:032-453-22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7.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압류내역

번호	차량번호	소유자	압류기관	비고
1	30무5501		남동구청교통과, 서울송파구청교통과, 인천남부경찰서, 인천시청교통지도과, 부천시청교통지도사업소, 국민연금관리공단서인천지사	
2	3리4610		남동구청교통과, 남구청교통과, 인천남부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 인천차량등록소, 현대캐피탈	
3	30모5897		중구청교통과, 서구청교통과, 남구청교통과, 연수구청지역교통과	
4	30구8931		강원은행, 서울보증보험, 인천남부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	
5	2머9095		인천차량등록사업소, 남동구청교통과, 부평구청교통과, 구로구청교통과, 용산구청교통과, 서울중구청교통과, 서울보증보험, 마포구청교통과, 강서구주차관리과	
6	31더3701		인천시차량등록사업소, 남구청교통과, 인천시청교통지도과, 인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	
7	3리9421		국민연금관리공단인천지부장, 마포구청교통지도과, 강남구청교통지도과, 남동구청교통과, 서울보증보험(株), 국민건강보험공단남동지사, 인천차량등록사업소, 연수구지역교통과	
8	31기7544		남동구환경위생과, 안양시동안구청교통과, 안산시교통통합민원실, 강남구청교통과, 인천남동경찰서, 서울마포구청교통과, 남동구청교통과, 인천차량등록사업소	
9	1기6064		(주)대우자동차, 중구청교통과, 남구청교통과, 종로구청교통과, 원산구청사회과, 남동구청교통과, 인천차량등록사업소	

10	4716229		인천기계공업공단의료보험조합, 기영전자㈜, 중구청교통과, 남동구청교통과, 인천남부경찰서, 마포구청교통과, 계양구청세무과, 인천남동경찰서, 강서구청교통과, 인천차량등록사업소	
11	80다5102		인천차량등록사업소, 남동구청교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남부지사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3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동부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석정중학교시설사업 및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간석4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7.18 ~ 2003. 8.16(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8.16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4)

2003. 7.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간석동	405-1	작업장	철골천막	48	김경준	남.주안동 33-10	
2	간석동	762-73	주택	시멘트벽돌스 레트	19.84	박문주	남동구 간석4동 762-2	
			주택	시멘트벽돌스 레트	11.84			
			주택	시멘트벽돌스 레트	9.6			
			창고	목조	12			
3	간석동	614	창고	목조	13.5	이만근	남동구 간석동 462-54	
4	간석동	360-4	방	합판스레트	23	조태중	남동구 간석동 360-4	
			부엌	합판스레트	6.9			
			창고	합판스레트	4.5			
			담장	함석	118.5			
			담장	목재	14.3			
5	간석동	366	방	목조함석	14.7	송수복	남동구 간석동 366	
			방	목조함석	44.8			
			부엌	목조함석	7.2			
			부엌	목조함석	5.5			
			창고	목조함석	24.2			
			바닥	콘크리트	141.9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4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7. 18 ~ 2003. 8. 16(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8. 16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4)

2003. 7.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논현동	559-18	사무실	컨테이너	18.00	김택규	남동구 논현동 559-18	
			가추	철골천막	49.56			
			창고	철골천막	6.24			
			폐기물창고	목조함석	7.60			
			창고	컨테이너	4.80			
			화장실	목조스레트	2.10			
			세면장	목조함석	2.64			
			구가옥	조립식판넬	33.39			
			가추	쇠파이프천막	42.35			
			토끼장	철재	2.00식			
			건사	철재	1.0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6호

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만수동 소3-91호선 도로개설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1-113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공사개요

- L=96m, B=6m

- 아스콘포장 : 5.4a

- L형옹벽 : 32m

마. 설계금액 : ₩117,537,840원 [추정가격87,950,909원,부가세8,795,091원,(지장물
이설비10,000,000원 포함)관금액20,791,840원]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G2B(국가종합전
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3. 7.21(월) 09:00~2003. 8. 1(금) 13:00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3. 7.21(월) ~2003. 8. 1(화) [도시계획과]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3. 8. 1(금) 14: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2002. 10. 2)]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2002. 10. 2)]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이 87.7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후 지체없이 결정 통보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의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입찰가격평가(90점),경영상태평가(10점) 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96,746,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 제99호),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032-453-221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 7.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분 임 경 리 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8호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안)

2. 제정취지

논현동 179-33번지상에 건립중인 해수공급시설이 2003년 9월경 준공예정인 바, 동 시설이 완료되면 소래어시장을 포함한 소래지역의 해수 사용자에게 공급하게 됨에 따라 해수공급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해수공급의 목적 및 시설의 정의(조례안 제1조, 제2조)
- 해수공급시설의 적용범위(조례안 제3조)
- 해수공급시설의 관리 및 사고예방 방지등을 규정(조례안 제4조)

- 사용료의 징수 및 해수공급의 취소·중단의 권한 규정
(조례안 제5조, 제6조)
- 위탁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조례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8월 11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도시정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032-453-267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기간 : 2003. 7. 22 ~ 2003. 8. 11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사유

- 논현동 179-33번지상에 건립중인 해수공급시설이 2003년 9월경 준공예정인 바, 동 시설이 완료되면 소래어시장을 포함한 소래지역의 해수 사용자에게 공급하게 됨에 따라 해수공급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해수공급의 목적 및 해수공급시설의 정의
(안 제1조 내지 제2조)
- 해수공급 시설의 적용범위(안 제3조)
- 해수공급시설의 관리 및 사고예방 방지등을 위한 규정
(안 제4조)
- 사용료의 징수 및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의 권한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 위탁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7조 및 제8조)

☐ 본 문 : “별첨”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논현동 179-33번지에 설치된 해수공급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해수공급시설”이라 함은 소래포구 해안경관의 제고와 소래포구의 경제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남동구 논현동179-33번지에 설치된 해수취수·정수시설 및 송수관·저장탱크등의 제반 시설을 말한다.
- ②“공사”라 함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상가)를 연결하는 송수관 및 기타 관리시설등의 시설설치를 말한다.
- ③“사용료”라 함은 해수공급시설에 의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매월 부담하는 해수사용량에 비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소래지역) 관내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설치한 해수공급시설에 의한 해수를 공급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구청장은 해수공급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장비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수공급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안전관리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최초 설치운영 이후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해수공급시설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탁관리)시설물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해수공급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